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이 제 현** Je-Hyun Lee

| I 목 차 I | |
|------------------------------------|-----------------------------|
| I. 서론 | IV.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새로운 법리적 해석 |
| II. 무역계약과 신용장 개설 및 변경 간의 이론적 고찰 | V. 결론 참고문헌 |
| III. 대법원 판례분석 | Abstract |

국문초록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주제어> 무역계약의 이행기일, 신용장 선적기일 변경, 신용장 승낙기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신용장 변경 거부

* 2023년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E-mail: ljh69@hnu.kr

I. 서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판매계약에서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는 동시이행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역계약서에 합의한 세부 사항을 무역계약 조항으로 기재하게 된다. 대금지급 조건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계약에 명시된 선적기일이 기재된 신용장을 매도인에게 개설한다. 이런 경우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을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과의 법률관계, 무역계약의 변경에 따른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의 변경과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의 변경, 매도인의 신용장 승낙 기간과 변경 요청 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법리적 문제와 연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첫째,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무역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무역계약이 타결되어 무역계약서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었지만 매도인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 무역계약과 신용장 간의 법률관계를 제시하겠다.

둘째, 매도인은 매수인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으면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신용장 내용을 검토한 후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매도인의 승낙 기간은 언제로 볼 것인가 이다. UCP 600에서 서류심사기간은 5 은행영업일로 명시되어 있지만 매도인의 신용장 승낙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의 신용장 승낙 기간을 제시한다.

셋째,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적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게 되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의 선적기일 변경 요청을 승낙하여야만 하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지 책임을 진다면 어떤 법리적 근거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넷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Ⅱ. 무역계약과 신용장 개설 및 변경 간의 이론적 고찰

1.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수출상품의 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하면 성립된다. 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하면 이에 대해서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4조 제1항).

여기서 충분히 확정적이라는 것은 청약서에서 물품을 명시하고 수량과 물품 대금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청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청약서에 구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김성필, 2005). 만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하여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Shmitthoff, 1990).

청약은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확정적 청약의 경우에 청약의 거절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확정적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승낙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으로 간주하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제1항),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대응청약으로 본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1항).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조건이 계약조건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3항).

청약서에 기재된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 수량, 인도장소, 시기, 청약범위, 분쟁해결 방안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반대청약으로 본다.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자의 영업소, 우체국,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거소에 전달 될 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무역계약과 신용장 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의 신용장개설 의무와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UCP 600 제3조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참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매입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기속 당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신용장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무역대금 결제조건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무역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무역계약의 당사자와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무역계약과 신용장의 독립적인 관계는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무역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무역계약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었지만 무역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기존에 개설된 신용장은 무효가 되고 무역계약이 변경된 대로 다시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무역계약이 변경된 대로 다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무역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03977 판결).

3.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계약 이행기일

물품판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계약이다. 판매계약은 판매와 판매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고 판매에 대한 합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미래에 또는 어떤 조건이 성취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판매계약으로 본다. 판매는 판매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것과 판매에 대한 합의는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성취되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판매되며 따라서 판매는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계약과 양도인 반면에 판매에 대한 합의는 계약이다.

판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하자물품에 대해서 매도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를 합의한 매도인과 매입하는 매수인 사이에 물품을 소유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은 구분되는데 소유권의 이전은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전되거나 인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인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인도상태로 매수인의 어떤 상호조치 없이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인도와 물품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인도와 물품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조건이다(Guest, 1987).

동시이행조건은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수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자 마자 물품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점유권은 법률상의 청구를 수반하는 물품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거래를 제외하고 물품대금동시이행의 원칙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에도 적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선하증권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 다르게 물품인도, 소유권, 점유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매도인은 인코텀즈 2020에서 명시된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거나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물품인도 의무는 끝난다(형약심, 박성호, 2017).

물품인도 장소부터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매수인을 대신한 해상운송인이나 창고업자가 물품을 점유하게 되고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인수하면 매수인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끝나게 된다.

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이행기일은 물품인도 기일과 물품대금 지급기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기일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로 본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1조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도록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제30조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과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의 매입 기일로 보아야 한다.

4.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기간과 무역계약 이행기일의 관계

신용장은 매수인이 개설은행에게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매도인은 통지 받은 신용장을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개설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용장이 무역계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나 독소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신용장을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도록 요청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개설된 신용장이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신속히 신용장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Baker and Dolan, 2008).

UCP 600에서 제3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이 취소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모두 합의해야만 가능하며 매도인이 먼저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변경을 요청하게 되는데 매도인이 언제까지 신용장의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지 UCP 600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확인하고 신용장이 수익자가 무역계약에서 매수인과 합의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도록 매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UCP 600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하였지만(이방식, 박석재, 2011) 다시 개설하도록 요청하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UCP 600 제10조 C항에서 수익자는 변경된 신용장의 수락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채, 변경된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지정된 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출하면 이는 수익자에 의한 변경된 신용장의 수락통지로 간주되며 비로 그 시점에서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규정하여 매도인이 변경된 신용장을 승낙하는 기간은 매입시점까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신용장을 인수하고 나서 매도인이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에 행사한 매도인의 권한은 타당하지, 매도인이 이 기간에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 매수인은 승낙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신용장 거래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너무 제한하면 매도인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신용장을 받고 나서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변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UCP 600에서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을 UCP 500에서 규정한 제7은행영업일에서 최대 5은행영업을 단축하였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제7은행영업일은 불필요하게 서류심사과정을 지체함으로써 신용장의 처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박석재, 2007). 개설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신용장 내용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조건변경기간을 제5은행영업일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에 신용장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무역계약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개설의뢰인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매도인이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신용장의 변경을 매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요청한 대로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기존에 개설된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이 아니라 다시 개설되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로 보아야 한다.

Ⅲ. 대법원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한국의 A사는 2010년 4월에 대만의 B사에게 A사가 제조하는 네비게이션에 사용될 터치 윈도우 패널의 제작 주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시점부터 8월까지 A사가 요구하는 터치 윈도우 패널의 디자인, 색상 등 사양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B사로부터 이를 반영한 제작도면을 교부받아 검토하였다. A사는 2010년 8월 13일에 터치 윈도우 패널 5,000개를 124,000달러에 B사의 타이완 공장에서 인도받는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2010년 8월 30일까지 제작하여 공급해달라는 발주서를 B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발주서에는 대금지급은 신용장으로 하고 이행기를 2010년 8월 30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승인상의 문제로 공용자재인 IC를 제외한 센서판, 커버윈도우, FPC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IC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금액의 80%인 99,200달러를 A사가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B사는 2010년 8월 20일에 그때까지 제시된 A사의 사양에 맞춘 견본품을 제작하여 A사에게 요구하였고 A사는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2010년 10월 8일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2010년 10월 15일에는 전면 윈도우 디자인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하며 2010년 10월 25일에 전면 윈도우의 강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A사는 2010년 10월 26일에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승인하였고, 2010년 11월 4일에는 제품의 커버 렌즈 부품 및 글씨, 색상, 디자인 등을 승인함으로써 B사가 제작한 견본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B사는 2010년 9월 13일에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견적송장을 A사에게 송부하였고 견적송장에는 대금은 대만에서 본선인도조건(FOB Taiwan)에 따른 전신환 사전송금 또는 일람불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행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A사는 2010년 10월 21일에 견적송장을 첨부하여 B사에게 최종 선적기일이 2010년 11월

20일로 기재되고, 대만공항 본선인도조건(FOB Taiwan Airport)으로 기재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B사는 2011년 5월 2일에 A사에게 제품의 수량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해 A사는 B사가 2011년 5월 23일에 계약의 이행기는 2010년 11월 20일 인데 B사가 상기 이행기 내에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B사는 A에 손해배상책임을 저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B사는 A사를 걸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결

1) 무역계약 체결일자에 대한 판단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11가합139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사가 2010년 8월 13일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 이행기가 기재된 발주서를 B사에게 보냈고 발주서에 승인상 문제로 IC를 제외한 부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나머지 자재금액의 80%를 지불하는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발주서를 보내기 전에 3차례 B사에게 제품의 도면 및 샘플 제작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B사는 제품 샘플을 제작하여 A사에게 보냈으며 발주서에는 이행기가 2010년 8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2010년 11월 20일로 변경하였고, B사는 A사로부터 제품 사양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고, 이행기에 관하여는 제품 사양이 확정된 후에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A사가 B사에게 발주서를 보낸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이에 대해 B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품의 제작을 위한 샘플과 도면을 제작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를 하여 2010년 8월 13일에 무역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59871)

서울고등법원은 준거법을 한국 상법과 민법으로 보았고 A사가 2010년 8월 13일에 B사에게 제품의 수량, 대금지급, 이행기, 특약사항이 기재된 발주서를 보냈고 이전에도 수차례 A사의 사양에 맞춘 제작도면과 샘플제작을 요구하였고 이에 B사는 샘플을 제작하여 A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았고 이행기가 2010년 8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양변경을 하다 2010년 10월 4일에 최종 샘플 승인을 하여 B사가 제품을 제작하고 있던 중에 A사가 신용장 개설 의뢰 당시 이행기를 2010년 11월 20일로 기재한 점, B사가 2010년 9월 13일에 본선인도조건과 대금은 전신환 또는 일람불 신용장으로 지급된다는 견적송장을 A사에 송부하였고 대금지급 방법이 이전에 보낸 발주서와 상이하더라도 이 지급방법은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A사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A사가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당초와 같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조건으로 확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게 되었고 발주

서에 기재된 공장인도조건과 견적송장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타이완공항 인도조건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아니므로 B사가 견적 송장에서 변경한 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해 A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A사는 발주서를 보내기 이전에 B사에게 사양에 따른 제작도면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B사의 제작능력을 신뢰하게 되었고 공급을 요구하는 물품의 수량 및 대금을 특정한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A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품제작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하여 B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도면과 샘플을 제작하는 등으로 A사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일부 부수적인 조건을 변경한 견적 송장을 송부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무역계약은 주문서의 청약 조건을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하여 그 조건대로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제품은 A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제작이 가능하므로 B사와 A사는 이행기를 추후의 진행 경과를 보아 특정하기로 하였고 이행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인 2010년 9월 13일로 보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역계약 체결일을 발주서를 보낸 2010년 8월 13일로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견적송장을 보낸 2010년 9월 13일로 보았다.

2) 무역계약의 정기행위에 대한 판단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B사의 의무는 A사의 제품사양에 대한 최종 승인 등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B사는 A사의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제품을 A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게 된 것이므로 B사의 이행지체가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무역계약이 정기행위라 할지라도 B사는 A사에게 무역계약에서 정한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가)호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인도시기의 무조건적 준수가 그 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미준수는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 되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으로 적기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점과 A사가 조기에 제품을 공급받길 원했고 B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은 이 계약이 정기행위 계약으

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B사와 A사 간에 계약이 이행기를 경과하여 A사에게 이행 받을 이익이 전혀 없는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양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

(3) 법원의 정기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민법 제545조에서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을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와 동일하게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합의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에 명시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정기행위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정지조건부에 대한 판단

(1) 입증책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지지하는 사유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 계약에서 제품 사양의 최종 확정일 이후 상당 기간 내에 이행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인지를 볼 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계약의 이행기는 2010년 12월 말 이전에 이미 확정 되었다고 보았다.

(2) 서울고등법원의 정지조건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김성호, 2022). 민법 제147조 제1항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품 사양이 최종 확정일 이후 상당 기간 내에 이행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기는 이미 2010년 12월 말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4) 서울고등법원의 계약 이행기 확정 및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B사가 발주서에 이행기를 2010년 8월 30일로 기재하였다가 2010년 10월 21일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선적기일을 2010년 11월 20일로 기재한 것은 A사와 B사가 특정일을 이행기로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B사가 제

조 판매하는 제품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으로 적기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판매경쟁에서 뒤질 위험이 큰 상품임으로 A사가 조기에 이 제품을 공급받길 원하였고 B사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B사는 제품 사양에 관한 A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제품의 제작을 완성할 수 있고 발주서나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 아직 최종 승인이 없었으므로 A사와 B사는 제품의 이행기를 확정할 수 없었고 A사는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인 2010년 11월 4일에야 B사에게 제품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해주었다는 점, B사는 2010년 11월 3일에 계약에 관한 B사의 대리인을 통해 A사에게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도 2010년 11월 30일까지 제품 중 500개, 2010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나머지 제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통보하고 신용장의 선적기일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리인은 A사의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보한 후 B사에게 다음 주 중에 선적기일이 변경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통지한 점, 그 후 A사의 담당자는 2010년 11월 17일에 B사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A사는 2010년 11월 18일에 B사에게 커버렌즈 승인을 마지막으로 한 샘플승인서는 2010년 11월 2일에 접수되었는데 커버렌즈의 납기는 4주 내지 6주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커버 렌즈가 납품되고도 2주 이상 작업 일정이 소요되어 최대한 빨리 생산하더라도 2010년 11월 30일까지 1,000개, 2010년 12월 15일 전까지 4,000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B사가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커버 렌즈를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A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협력업체 커버 렌즈의 생산을 의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커버 렌즈를 생산하려면 30일이 소요되며, 커버 렌즈를 인도받은 이후에도 2주 정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A사가 신용장이 개설된 2010년 10월 21일까지 최종 승인을 하였다면 신용장 선적기일인 2010년 11월 20일까지 제작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 A사와 B사는 신용장에서 정한 선적기일인 2010년 11월 20일 이행기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없음에도 A사가 임의로 전적기일을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해서 A사와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이행기를 제품의 제작도면 및 샘플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 B사의 제작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최단시간으로 이를 특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A사의 최종 승인이 2010년 11월 4일에 있었고 이로부터 커버 렌즈를 주문하여 수령한 후 B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적어도 4주 내지 6주 정도가 걸리는 것을 A사와 B사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그 이행기는 2010년 12월 2일에서 12월 16일 무렵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A가 신용장의 선적기일로 정한 2010년 11월 20일은 신용장일 개설할 무렵 최종 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A사의 희망 이행기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계약의 이행기는 이미 확정되어 도달하였다고 보았다.

5) 서울고등법원의 B사의 이행거절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나)호에서 인도 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이 제47조 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

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72조 제1항에서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사의 대리인이 2010년 11월 18일에 A사에게 이번 주 중으로 신용장의 선적기일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B사가 앞서 제시한 일정을 맞출수 있고, 만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B사는 2010년 12월 24일에 그의 대리인에게 제품의 납품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A사가 특약에 따라 자재대금의 80%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대리인은 이를 A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이 인정되고, 신용장의 선적기일이 정해진 경위와 B사가 그 수정을 수차례 요구한 점, A사의 최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신용장이 정한 선적기일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A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A사는 선적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특약은 B사의 제작도면 또는 샘플이 A사의 요구 사양에 미치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인데 A사는 제품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였으므로 특약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B사의 통지가 A사가 행기 변경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그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B사는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였고, 비록 이행기가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5월 12일경에 수령을 최고한 점, B사가 상기와 같은 통지 만으로 계약 이행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등을 근거로 B사가 이행거절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의 B사의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이 계약에서 합의한 원래의 대금지급 방법은 일람불 신용장에 의한 것으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절차는 먼저 매수인이 개설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개설은행에 담보를 제공한다.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매도인에게 통지되면 매도인이 약정한 인도조건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선적서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은행에 매도하거나 추심위임을 하고, 선적서류 등이 매입은행이나 추심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은 매수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각 의무의 이행은 전체적으

로 보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B사의 제품 인도 의무와 A사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 이외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B사가 제품을 위 이행기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A사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B사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IV. 대법원판결의 문제점과 새로운 법리적 해석

1. 법원 판결의 문제점

1) 법리적 해석에 관한 문제점

매수인은 무역대금은 신용장으로 지급된다고 기재된 발주서와 견적서를 매도인에게 송부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기일이 기재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발주서 및 견적서는 개설된 신용장과 밀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법률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역계약의 측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관계를 조망하는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역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관계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2)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 기간에 대한 법리적 해석

A사가 2010년 1월 21일에 2010년 11월 20일로 선적기일이 기재된 취소불능신용장을 B사에게 개설하였고 B사는 2010년 11월 3일에 A사에게 선적기일을 변경해서 다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사는 취소불능신용장을 받고 나서 15일이 지난 후에 선적기일을 변경하는 신용장 조건 변경을 A사에게 요청하였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일단 개설되면 매도인, 개설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이 동의하

지 않는 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B사가 A사로부터 취소불능신용장을 받고 나서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요청한 것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3)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에 대한 판단

A사와 B사가 견적송장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견적송장에는 이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체결과정을 통해 이행기일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이 선적기일인지 아니면 물품인도 기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기일은 선적기일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기일은 매도인의 서류 매입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인용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거주자 간의 아파트,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A사와 B사가 체결한 국가 간 상거래에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 법리적 해석이었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역계약과 신용장 개설에 대한 매수인의 의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리적 해석이라고 본다.

2. 새로운 법리적 해석의 제시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무역계약의 한 당사자가 합의한 무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다른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무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기존에 체결된 무역계약은 무효로 보아야한다. 최종적으로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무역계약이 성립되어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합의한 무역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A사가 발주서를 B사에게 제시하여 B사가 이를 승낙하여 무역계약이 체결되었지만 A사가 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양서 변경과 샘플의 제작 및 승인 요구를 하였고 B사는 A사의 요구조건 대로 수행하여 무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A사와 B사는 최종적으로 견적서에 합의하였고 그 시점에서 무역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사와 B사는 견적서에 대금은 신용장으로 지급된다고 합의 하였다. A사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한 선적기일을 준수하도록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신용장을 B사에게 개설하여야 하며 A사가 B사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용

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무역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A사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사는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견적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A사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A사의 거래은행은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기 거래은행을 통해 B사에게 통지한다. B사와 신용장을 개설한 A사의 거래은행 간의 법률관계는 B사가 통지된 신용장을 승낙하면 그 시점에서 성립된다. B사는 통지된 신용장의 내용을 견적서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개설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B사는 통지된 신용장을 받고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사는 통지된 신용장을 받고 제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B사는 제5은행영업일 이 지난 이후에는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A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B사의 신용장 승낙 기간은 제5은행영업일로 보아야 한다. B사가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B사가 신용장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B사는 신용장 내용을 준수할 책임이 발생하며 B사가 신용장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신용장 승낙 기간은 개설된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도인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매수인에게 신용장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요청을 반드시 승낙하여 매도인이 요구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변경된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인이 요청한 대로 신용장이 다시 개설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사와 B사가 견적서에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A사는 견적서에 따라 B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의 대금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당사자의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된다.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V. 결론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는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이라는 용어가 없고 이행기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영란, 2020). 제30조에서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53조에서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기일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로 본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매입기일로 보아야 한다.

매수인은 무역계약에서 합의한 신용장을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개설된 신용장을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신용장 조건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용장 조건변경을 요청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개설된 신용장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서 신용장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신용장의 선적기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매수인은 반드시 매도인의 신용장의 변경 요청을 수락하여 매도인이 요구한 대로 신용장을 다시 매도인에게 개설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면 무역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UCP 600에는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저자는 UCP 500의 서류심사기간의 개정 사유를 근거로 제5은행영업일을 제시하였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UCP 600이 개정될 때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호(202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부 권리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3권 제3호, pp.129-152.
- 김성필(2005), “계약의 성립과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의 관계이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pp.169-195.
- 이방식, 박석재(2011),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제2호, pp.89-108.

- 이영란(202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법조 제29권 제4호, pp. 129-165.
- 박석재,(2007),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제1호, pp.63-89.
- 형약심, 박성호(2017),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pp.29-52.
- 대법원 2011다103977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 Baker, W. and Dolan, J.F(2008)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p.46.
- Guest, A. G. (1987), *Benjamin's Sale of Goods* (3th ed.), Sweet & Maxwell, 24-27.
- Shmiffhoff, C, M. (1990), *Export Trade* (7th ed.), Stevens & Sons, 90-91.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Je-Hyun Lee

Abstract

The seller and the buyer write down the agreed details in the trade contract as trade contract clauses. In the case where a letter of credit is agreed to be the payment condition, the buyer shall open a letter of credit to the seller with the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trade contract through its bank. In this cas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date of the trade contract and the shipment date of the letter of credit, the change of the performance date of the trade contract due to the change of the trade contract and the change of the shipment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s letter of credit A problem arises i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pproval period and the change request perio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precedents of the Seongnam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elated to these legal issues.

The performance date of a trade contract is the seller's delivery date and the buyer's payment date.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he trade contract is regarded as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date of negotiation of documents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 must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letter of credit within 5 ban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letter of credit from the buyer. After this period has elapsed, the seller cannot refuse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if the buyer is unable to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letter of credit within 5 banking days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buyer,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will be extended. If the seller requests an amendment to the letter of credit, the buyer must accept it and open the letter of credit the seller desires to the seller. If the buyer refuses the seller's request to change the letter of credit, company A has the obligation to change and reopen the letter of credit as requested by company B. Expect by agreeing on the quotation

As it i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tipulated in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mpany B can cancel the trade contract and claim damages from company A.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ompany A's breach of the trade contract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loss suffered by Company B as a result of the breach, including loss of profits.

〈Key Words〉 Performance Date of Trade Contract, Change of Shipment Date of Letter of Credit, Acceptance Period of Letter of Credi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fusal to Change Letter of Credit